

1. 개정이유

태권도대사범 지정기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태권도대사범 지정기준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항목별 평가 지표,
평가 방식, 평가 배점 등을 조정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태권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 시행
규칙 [별표]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제6조 관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0. 12. 4.> <u>태권도대사법의 지정 기준(제6조 관련)</u> 1. 지정 기준 제2호에 따른 각 항목별 평점을 합산한 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일 것 2. 항목별 평가방법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신설 0000. 00. 00.> <u>태권도대사법의 지정 기준(제6조 관련)</u> 1. 지정 기준 제2호에 따른 각 항목별 평점을 합산한 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일 것 2. 항목별 평가방법		
항 목	평가지표	평가 (평점)	항 목	평가지표	평가 (평점)
가. 윤리성 (50점)	1) <u>지역 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및 고객 등의 평판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결과 이의제기 등이 없거나 이의제기가 허위로 밝혀진 사람: 배점 50점의 범위에서 공적조서상의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u>	50	정성 평가/ 가. 윤리성 (50점)	1. 태권도에 대한 전문적 식견 및 기술을 겸비한 국기원 9 단자로서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고, 태권도인들에게 존경받으며,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 가) 태권도분야 종사자로서 직업 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과 태권도에 대한 가치관 및 전문식견을 갖추고 기술 시연이 가능한 사람 나) 태권도대사법으로 사명감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람 다) 지역 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등의 평판이 우수한 사람	30 10 10
	2)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 가)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결과 이의제기가 사실로 밝혀진 사람 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태권도대사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치 않	0		2) 결격사유 가)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제기가 사실로 밝혀진 사람 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람	결격 처리

현행			개정안		
	<u>다</u>고 판단되는 사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행한 사람 및 <u>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었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마)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 또는 추천 당일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사람 바)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되었거나 「정부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사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행한 사람 및 <u>같은 법 제11조의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었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마)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 또는 추천 당일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사람(단, 일시적 체납자는 <u>제외하며 1년 이상 장기 체납자에 한정한다.</u>) 바)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되었거나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사람 <u>사)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u>	
나. 보급 실적 (50점)	1)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30년 이상 꾸준히 해 오면서 1,000명 이상의 후학을 양성한 사람	50	정량평가/나. 보급 실적 (50점)	<u>1. 태권도 교육 분야 종사자로서 선수 및 수련생을 직접 지도하여 국기원 단(품)을 취득한 유단(품)자를 다수 양성한 사람</u> 가) 태권도 교육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40년 이상인 사람 나) 태권도 교육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5년 이상인 사람 다) 태권도 교육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0년 이상인 사람 <u>2. 태권도 교육 분야 종사자로서 국기원 단(품) 취득한 유단(품)자를 1,000명 이상 양성 하였거나 국기원 6단 이상 취득한 유단자를 5명</u>	45
	2)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25년 이상 꾸준히 해 오면서 850명 이상의 후학을 양성한 사람	40		40	

현 행			개 정 안		
	3)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20년 이상 꾸준히 하게 해 오면서 700명 이상의 후학을 양성한 사람	30	이상 양성한 사람 또는 1명 이상의 국제대회 선수를 배출한 자		
	4) 다른 사람의 승품·승단 심사추천 권한을 부정하게 이용하여 후학에게 품·단을 취득하게 한 사람	0	3. 1. 또는 2.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다. 봉사성 (가점제) (10점)	1) 지역 주민, 봉사단체 및 봉사시설의 관계자 등의 평판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봉사실적이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25일 이상인 경우	10	1. 국내 및 해외 태권도분야 봉사실적 증명서 기준으로 해당 지역민 봉사단체 및 봉사 시설 관계자 등의 평판이 우수한 사람으로 태권도 분야 종사 기간 중 5년간 평균 25일 이상인 경우	5	
	2) 지역 주민, 봉사단체 및 봉사시설의 관계자 등의 평판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봉사실적이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15일 이상인 경우	5	2. 태권도 보급 활동을 통한 정부 상훈법에 따른 체육훈·포장 수상자 및 국제대회 수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5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3. 1. 또는 2.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비고			비고		
1. 후학 양성 수는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을 하는 사람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한 도장에서 품·단을 신청하여 취득한 사람의 수만 인정한다.			1. 태권도 교육 분야 종사한 경력은 도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등(스포츠클럽, 생활체육시설 등 포함)을 모두 포함한다.		
2. 봉사실적 연간 평균 일수는 하루 5시간 이상을 말한다. 다만, 하루 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합산하여 5시간이 넘는 경우 1일로 환산할 수 있고, 봉사실적증명서에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봉사의 종류에 따라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점수를 배분할 수 있다.			2. 국제대회 기준은 올림픽,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대륙별 종합대회를 말한다.		
3. 봉사실적에 따른 점수(10점)는 장소에 따라 자국 봉사실적 50%(최대 5점), 해외 봉사실적 50%(최대 5점)로 구분한다.			3. 국내 태권도단체라 함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를 말한다.		
4. 거주 국가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해당 연도부터 해외 봉사실적이 아닌 자국 봉사실적(해외국적 취득 후 한국에 들어와 봉사한 경우도 자국 봉사실적으로 본다)으로 인정한다.			4. 봉사실적 연간 평균 일수는 하루 5시간 이상을 말한다. 다만, 하루 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합산하여 5시간이 넘는 경우 1일로 환산할 수 있고, 봉사실적증명서에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봉사의 종류에 따라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점수를 배분할 수 있다.		
			5. 자국 또는 해외 봉사실적 증명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		

현 행	개 정 안
5. 자국 또는 해외 봉사실적 증명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계태권도연맹 회원단체, 국제연합(UN)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인정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실적 증명서만 인정된다.	방자치단체, 세계태권도연맹 회원단체, 국제연합(UN)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인정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실적 증명서를 말한다. 기타 태권도 관련 봉사 실적 증명서는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0. 12. 4.> 태권도대사법의 지정 기준(제6조 관련) 1. 지정 기준 제2호에 따른 각 항목별 평점을 합산한 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일 것 2. 항목별 평가방법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신설 0000. 00. 00.> 태권도대사법의 지정 기준(제6조 관련) 1. 지정 기준 제2호에 따른 각 항목별 평점을 합산한 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일 것 2. 항목별 평가방법		
항 목	평가지표	평가 (평점)	항 목	평가지표	평가 (평점)
가. 윤리성 (50점)	1) 지역 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및 고객 등의 평판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결과 이의제기 등이 없거나 이의제기가 허위로 밝혀진 사람: 배점 50점의 범위에서 공적조서상의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	50	정성 평가/ 가. 윤리성 (50점)	1. 태권도에 대한 전문적 식견 및 기술을 겸비한 국기원 9단자로서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고, 태권도인들에게 존경받으며,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	30
	2)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 가)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0		가) 태권도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과 태권도에 대한 가치관 및 전문식견을 갖추고 기술 시연이 가능한 사람	
				나) 태권도대사법으로 사명감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람	10
				다) 지역 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등의 평판이 우수한 사람	10
			2) 결격사유 가)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결과		결격 처리

현 행			개 정 안		
가. 윤리성 (50점)	결과 이의제기가 사실로 밝혀진 사람		정성 평가/ 가. 윤리성 (50점)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제기가 사실로 밝혀진 사람	
	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행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채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었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마)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 또는 추천 당일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사람 바)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되었거나 「정부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사람			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와 관련하여 수사중인 사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행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1조의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 채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었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마)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 또는 추천 당일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사람(단, 일시적 체납자는 제외하며 1년 이상 장기 체납자에 한정한다.) 바)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되었거나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사람 사)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나. 보급	1)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30년 이상 꾸준히 해	50		1. 태권도 교육 분야 종사자로서	

현 행			개 정 안		
실적 (50점)	오면서 1,000명 이상의 후학을 양성한 사람		정성 평가/ 나. 보급 실적 (50점)	선수 및 수련생을 직접 지도하여 국기원 단(품)을 취득한 유단(품)자 를 다수 양성한 사람	
	2)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 생 지도를 25년 이상 꾸준히 해 오면서 850명 이상의 후학을 양성한 사람	40		가) 태권도 교육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40년 이상인 사람	45
	3)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 생 지도를 20년 이상 꾸준히 해 오면서 700명 이상의 후학을 양성한 사람	30		나) 태권도 교육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5년 이상인 사람	40
다. 봉사성 (가점제) (50점)	4) 다른 사람의 승품·승단 심 사추천 권한을 부정하게 이 용해 후학에게 품·단을 취 득하게 한 사람	0	다. 봉사성 (가점제) (10점)	다) 태권도 교육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0년 이상인 사람	35
	1) 지역 주민, 봉사단체 및 봉사 시설의 관계자 등의 평판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봉사실 적이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25 일 이상인 경우	10		2. 태권도 교육 분야 종사자로서 국기원 단(품) 취득한 유단(품)자 를 1,000명 이상 양성 하였거나 국 기원 6단 이상 취득한 유단자를 5명 이상 양성한 사람 또는 1명 이상의 국제대회 선수를 배출한 자	5
	2) 지역 주민, 봉사단체 및 봉사시 설의 관계자 등의 평판이 우수 한 사람으로서, 봉사실적이 최 근 5년간 연간 평균 15일 이상인 경우	5		3. 1. 또는 2.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0
비고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정성 평가/ 다. 봉사성 (가점제) (10점)	1. 국내 및 해외 태권도분야 봉사실적 증명서 기준으로 해당 지역민, 봉 사단체 및 봉사 시설 관계자 등의 평판이 우수한 사람으로 태권도 분야 종사 기간 중 5년간 평균 25 일 이상인 경우	5
				2. 태권도 보급 활동을 통한 정부 상 훈법에 따른 체육훈·포장 수상자 및 국제대회 수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5
				3. 1. 또는 2.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0
비고 1. 후학 양성 수는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을 하			비고		

현행	개정안
는 사람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한 도장에서 품·단을 신청하여 취득한 사람의 수만 인정한다. 2. 봉사실적 연간 평균 일수는 하루 5시간 이상을 말한다. 다만, 하루 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합산하여 5시간이 넘는 경우 1일로 환산할 수 있고, 봉사실적증명서에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봉사의 종류에 따라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점수를 배분할 수 있다. 3. 봉사실적에 따른 점수(10점)는 장소에 따라 자국 봉사실적 50%(최대 5점), 해외 봉사실적 50%(최대 5점)로 구분한다. 4. 거주 국가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해당 연도부터 해외 봉사실적이 아닌 자국 봉사실적(해외국적 취득 후 한 국에 들어와 봉사한 경우도 자국 봉사실적으로 본다)으로 인정한다. 5. 자국 또는 해외 봉사실적 증명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계태권도연맹 회원단체, 국제연합(UN)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인정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실적 증명서만 인정된다.	1. 태권도 교육 분야 종사한 경력은 도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등(스포츠클럽, 생활체육시설 등 포함)을 모두 포함한다. 2. 국제대회 기준은 올림픽,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대륙별 종합대회를 말한다. 3. 국내 태권도단체라 함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를 말한다. 4. 봉사실적 연간 평균 일수는 하루 5시간 이상을 말한다. 다만, 하루 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합산하여 5시간이 넘는 경우 1일로 환산할 수 있고, 봉사실적증명서에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봉사의 종류에 따라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점수를 배분할 수 있다. 5. 자국 또는 해외 봉사실적 증명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계태권도연맹 회원단체, 국제연합(UN)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인정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실적 증명서를 말한다. 기타 태권도 관련 봉사 실적 증명서는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